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39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 박지혜·김문수·허성무

채현일 · 김남근 · 박희승

김용만 · 용혜인 · 허 영

임호선 · 염태영 · 박정현

위성곤 · 오세희 · 민형배

박지원 • 박홍배 • 박해철

이소영 · 안호영 의원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배출효과에 대해서도 결산서 작성

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제2항제2 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위기인지 결산서 및 기후위기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	류) ①		
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			
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	7의2. <u>기후위기인지</u>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2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	2의2. <u>기후위기인지</u>		
산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5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			
른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	<u>기후위기인지</u>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			
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			
에 따른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	<u>기후위기인지</u>		
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